

##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으로 유지할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인사를 초빙하는 데 필요한 중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5.1.13>

**제1조의2(대상 및 시기)**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인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, 수시로 채용할 수 있다.<조이동·개정 2015.1.13>

1. 신설전공(학과) 및 본교의 특성화사업 및 국책사업, 국제교류교육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<개정 2019.1.23.>
2. 비정년계열 중 전임교수<개정 2019.1.23.>
3. 비정년계열 중 강의전담교수<개정 2019.1.23.>
4. 비정년계열 중 연구중심교수<개정 2019.1.23.>
5. 비정년계열 중 산학협력중점교수<개정 2019.1.23.>

**제2조(자격)**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연구실적, 교육경력 또는 전문직종 실무경력 등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, 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이어야 한다.

**제3조(서류제출 및 전형방법)** 특별채용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서류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형절차를 거친다.

1. 자기소개서(연구, 교육, 봉사, 각 항목별)
2. 이력서
3. 연구실적물, 경력증명서, 학위증명서(외국대학 박사학위소지자는 외국박사학위 신고접수증(학술진흥재단) 사본 1부)<개정 2015.1.13>
4. 전공(학과) 발전 계획서(구체적 작성 요)

**제4조(임용제청절차)** ① 교학지원처장은 초빙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교원 인사위원회에 송부한다.

② 교원 인사위원회는 임용여부를 판정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③ 교원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총장은 임용 제청 동의자의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임명 제청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.

**제5조(해촉)** 특별채용에 의하여 신규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
2.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곤란한 경우
3. 해당 전공(학과)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경우
4. 근무성적 및 교원으로서의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 자

부 칙(2002. 3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3. 10. 6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2-9-2-3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

---

부 칙(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